

주요심결사례

2002. 3. 9. 심결

사건명	위반내용	시정조치
강화유리문 제조 5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2001공동2469)	(주)합동하이텍그라스, 라이프안전유리(주), 삼보안전유리(주), (주)베스트안전유리, 대성유리공업(주)은 2001. 5. 29. 강화유리문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결정, 2001. 6. 1부터 같은 해 9. 4까지 강화유리문 판매가격을 장당 42,000~45,000원으로 동일하게 유지하였고, 2001. 5. 29. 거래처 확보경쟁을 회피할 목적으로 상대방의 기존 거래처에는 강화유리문을 판매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는 등 자신들의 거래상대방을 공동으로 제한하여 국내 강화유리문 시장에서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19조제1항제4호 위반	

2002. 3. 12. 심결

사건명	위반내용	시정조치
4개 페인트 판매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2001전사2654)	(주)조광산업, 대성페인트(주), 차득환(교려상사 대표), 이승수(천안오토케미칼 대표)는 2001. 3. 15. 충청남도 자동차정비업협동조합(이하 "충남정비조합"이라 한다)과 각각 자동차 보수용 페인트 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인근 다방에 모여 충남지역을 4개 권역으로 분할하여 피심인별로 1개 권역을 영업지역으로 하여 자동차 보수용 페인트를 공급하기로 하고 분할한 영업지역 내의 자동차정비업체와 거래할 것을 합의 이행하였고, 2001. 6. 12부터 같은 해 7. 10. 기간 중에 충남정비조합과 도장부수 자재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도장부수 자재에 대하여도 자동차 보수용 페인트의 영업지역과 동일하게 결정, 자동차 보수용 페인트 판매업 분야에 있어서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19조제1항제4호 위반	▶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연명으로 대전·충남지역에서 발행되는 1개 지방일간지 전판에 3단×10cm의 크기로 게재하여 공표토록 함

2002. 3. 16. 심결

사건명	위반내용	시정조치
<p>고려인삼연구소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2001광고2780)</p>	<p>고려인삼연구소는 2001. 7월~9월 기간중 일간신문 등을 통하여 자기가 판매하는 건강보조식품인 "신당안"에 대해 "미국 UCLA 의과대학 당뇨센터와 한국고려인삼연구소가 8년여에 걸쳐 공동으로 개발",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그 효능을 인정" 등으로 광고한 사실이 있으나, 자신의 제품이 미국 UCLA당뇨센터와의 공동연구에 의해 개발되었다는 객관적 근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FDA에 등록된 연구소는 식품류 등을 미국에 수출하기 위해 필요한 영양성분 분석 및 독성검사 등을 수행하는 단순한 시험기관으로 동 기관에서 시험을 거친 사실만을 가지고 FDA가 효능을 인정하였다고 광고할 경우 소비자는 마치 이 제품이 FDA에서 직접 임상실험 등을 거쳐 효능을 인정받음으로써 신뢰도가 대단히 높은 제품이라고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 허위·과장 광고행위로 인정되므로 표시광고법 제3조제1항제1호 위반</p>	
<p>(주)솔표조선건강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2001광고2782)</p>	<p>(주)솔표조선건강은 2001. 8월중 일간신문 등을 통해 자기가 판매하는 특수영양식품인 "아이키플러스"에 대해 "키는 나이와 관계없이 언제든지 클 수 있다"는 소재목하에 육상선수 임춘애가 20세 이후 키가 8cm이상 성장했다고 소개하고, "이의정과 함께하는 쑥쑥뽕뽕키크기대작전"이라는 소재목하에 "SBS-TV 뷰티플라이프에서 8주 동안 키가 3cm성장, 몸무게가 5kg감량이 입증되었습니다"라고 광고하는 등 자신의 제품을 사용하여 키성장 효과가 입증된 것처럼 표현한 광고행위는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 광고행위로 인정되므로 표시광고법 제3조제1항제1호 위반</p>	<p>▶ 부당한 광고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1개 중앙일간지 전판에 3단×10cm의 크기로 게재하여 공표토록 함</p>
<p>폴리우레탄패널 제조 6개사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2001광고2115)</p>	<p>기린산업(주), 덕유판넬(주), 동양판넬공업(주), (주)동진판넬, (주)신우산업, 역대산업(주)는 2001. 6. 1부터 건축물의 단열규정이 변경·시행됨에 따라 설계사무소 등에 자기가 생산하는 건축물 단열재인 폴리우레탄패널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하여 광고하기로 협의하고, 2001. 5. 28.자 매일경제신문을 통하여 연명으로 지역별 폴리우레탄패널 소모 두께에 대하여 스티로폼패널 및 그라스울</p>	<p>▶ 부당한 광고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연명으로 1개 중앙일간지 전판에 5단×12cm의 크기로 게재하여 공표토록 함</p>

사건명	위반내용	시정조치
	<p>패널과 각각 비교광고를 하면서 “이제부터 폴리우레탄패널로 설계하십시오. 스티로폼과 그라스울패널의 최대 1/2 두께로도 충분!” 이라고 표현하였는데, 각각 상이한 온도에서 측정된 3개 단열재의 열전도율 값(한국산업규격 KS기준)을 기준으로 각 단열재의 소요 두께를 계산한 행위에 대하여 살펴보면, 건축물 단열제품의 열전도율 값은 시료의 온도가 20±5℃(이하 '평균 20℃' 라 함) 상태에서 측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폴리우레탄패널은 평균 20℃에서, 그라스울패널은 평균 70℃에서 측정된 KS 기준의 열전도율 값을 적용하여 제품의 단열두께를 산정한 점, (주)기린산업이 2001. 4. 30. 단열재 제품에 대해 각각 상이한 온도에서 측정된 KS기준의 열전도율을 근거로 열관류율을 측정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 건설교통부에 서면으로 질의하여 건설교통부로부터 이 사건 그라스울에 해당하는 KS L9102(인조광물섬유보온재)의 경우, 시험을 위한 시료의 평균온도가 경질우레탄폼 보온재(KS M3809)와 다르므로 시험온도를 평균 20℃에서 측정할 열전도율 값을 사용하여야 한다는 회신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상이한 온도에서 측정된 열전도율 값을 적용한 점 등으로 볼 때 이 사건 광고는 비교기준이 적정하지 아니하고, 한편, 지역별로 소요되는 지붕의 패널두께를 경쟁제품은 시중의 유통제품을 기준으로 하여 표시하고 자기의 제품은 계산값에 근사한 값으로 표시하여 광고함으로써 자기 제품의 단열성능이 경쟁제품과 비교하여 실제보다 더 우수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부당한 비교광고행위를 함으로써 표시광고법 제3조제1항제3호 위반</p>	
<p>평촌신도시부동산중개업친목회 및 (주)텐커뮤니티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 등에 대한 건 (2001단체 2640)</p>	<p>평촌친목회는 회원들의 영업과 관련하여 회칙 제21조에서는 매주 일요일을 정기휴일로 지정하여 시행하고 제22조제4항에서는 중개업소 난립방지를 위해 신규업소가 개발되지 않도록 노력한다는 등의 경쟁제한적 회칙을 운영하고 있고, 소속 회원들의 정기휴일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2001년도 3월초부터 같은 해 10월말까지 감시조를</p>	<p>▶ 사업자단체금지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텐커뮤니티는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부동산 관련 전문지에 3단×10cm</p>

주요심결사례

사 건 명	위 반 내 용	시 정 조 치
	<p>편성, 운영함으로써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 공정거래법 제23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였고, 2001. 3. 13. 확대임원회의를 개최하여 비회원들과의 정보망 공동사용을 차단하기로 결의, 부동산정보망 제공사업자인 텐커뮤니티에 자신들의 비회원들에게는 자신들과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설치토록 요구하는 등 다른 사업자에게 불공정거래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으며, 동 요구에 텐커뮤니티는 평촌친목회의 비회원들에게는 평촌신도시 이외 다른 지역의 정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평촌신도시지역 정보를 제공해 주지 않는 등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26조제1항 및 제3호 위반</p>	<p>의 크기로 게재하여 공표토록 하고, 평촌신도시부동산중개업친목회는 회칙 제21조 및 제22조제4항의 내용을 시정명령 취지에 부합하도록 수정하거나 삭제토록 함</p>

2002. 3. 23. 심결

사 건 명	위 반 내 용	시 정 조 치
<p>현주컴퓨터(주)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2001. 광고2280)</p>	<p>현주컴퓨터(주)는 2000. 2월~3월 기간중 중앙일보 등 5개 중앙일간지에 컴퓨터 할인행사 광고를 하면서 「컴퓨터 전문기업-현주컴퓨터」, 「졸업과 입학을 축하합니다」라는 제하에 “5년 무상-평생 A/S를 실현합니다. 현주컴퓨터 빅 이벤트 빅세일기간에 컴퓨터를 구입하는 모든 고객들에게 5년 무상 A/S를 보장합니다(S/W, 소모품제외)”라고 표현하였는 바, 동 광고는 학생층을 주 대상으로 하는 특별할인행사에 사용된 것으로서 상업용 컴퓨터를 구입하는 고객의 경우에도 일반소비자와 같이 5년 동안 무상 A/S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표현한 행위는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 광고행위로 인정되므로 표시광고법 제3조제1항제1호 위반</p>	
<p>한국도로공사의 부당지원 행위에 대한 건 (2001.독관 1345)</p>	<p>한국도로공사는 1995년부터 1999년까지 고속도로카드 판매 및 수송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카드 수송은 자신이 직접 수행하고 카드 판매는 직영 영업소를 통해 판매하거나 외주영업소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 그 판매액의 1%</p>	

사건명	위반내용	시정조치
	<p>를 위탁수수료로 지급해 오다가 사내복지기금 재원확충을 위한 노사합의에 따라 2000. 1월부터 고속도로카드 판매 및 수송업무를 모두 노동조합이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도성기업(주)에게 수의계약을 통해 위탁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위탁수수료(용역비)는 영업소 카드 판매금액의 2%를 지급하되, 실제 지급액은 카드를 직접 판매하는 자신의 직영영업소와 외주영업소 지급액(판매수수료)을 공제한 차액을 지급하기로 2000. 1. 10. 도성기업(주)과 고속도로카드 수송·판매대행 협약서를 체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자신은 영업소 카드판매금액의 2% 중 1%를 영업소에 판매수수료로 직접 지급하고, 나머지 1%는 도성기업(주)에게 카드 수송 및 판매관리 위탁수수료로 지급하였으나 감사원으로부터 원가계산방식에 따라 계산한 적정 수수료보다 과다하게 지급했으므로 이를 시정하도록 하는 요구를 받게 되자, 2001. 6. 1부터 카드 수송·판매관리대행 수수료를 원가계산방식에 따라 산정하여 도성기업(주)과 재계약을 체결하는 등 과다한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 도성기업(주)을 부당하게 지원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23조제1항제7호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위반</p>	
<p>한국까르푸(주)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2001 광고2154)</p>	<p>한국까르푸(주)는 2001. 10. 11~10. 21. 기간 중 실시한 “해피 프라이스 까르푸 대축제” 행사와 관련한 광고전단지상에 TV등 가전제품 14개 품목에 대한 할부판매 가격에 대하여 「LG29인치 완전평면TV(CN-29Q 3X) : ₩899,000, 20개월 할부가 ₩44,950」의 예시와 같이 표기하여 전국 22개 까르푸 매장 소재 지역에 광고하였는데, 실제 소비자가 위 상품을 월 44,950원의 부담으로 구입하기 위해서는 할부구입 시점에 할부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인 116,870원을 선납하여야 하는 바, 소비자가 선납하여야 할 금액을 누락하고 일시불 가격을 할부기간으로 단순 평균한 금액만을 표기한 행위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함으로써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기만적인 광고행위로 인정되므로 표시광고법 제3조제1항제2호 위반</p>	

2002. 3. 27. 심결

사건명	위반내용	시정조치
(사)한국산업폐기물처리공제조합의 경쟁제한행위에 대한 건 (2001단체 2681)	(사)한국산업폐기물처리공제조합은 대형 배출업체들이 여러 조합원들에게 저가견적을 요구함에 따른 폐기물단가 인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정조합원이 기존 거래업체와 계약기간 만료시기가 도래하여 재계약협상중에 있을 경우 그 사실을 자신에게 통보토록 하고, 2000. 8. 22부터 다음 해 12. 11까지의 기간중 수도권 소재 17개 조합원을 대상으로 이러한 내용이 게재된 「거래질서유지 협조요청」이라는 문서를 101회에 걸쳐 나머지 조합원들에게 통보하여 이미 특정조합원이 재계약협상중에 있으므로 다른 조합원들은 재계약협상중인 건에 대해서는 기존 조합원이 재계약할 수 있도록 수주활동을 자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등 수도권지역 사업장폐기물 중간처리업 분야에서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19조제1항제4호 위반	▶ 경쟁제한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모든 구성사업자에 서면으로 통지토록 함

2002. 4. 2. 심결

사건명	위반내용	시정조치
(주)한국음성도메인센터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2001전보1981)	(주)한국음성도메인센터는 2000. 11. 21부터 소위 '음성도메인' 과 '음성키워드도메인' 을 등록 받으면서 중앙 4개 신문광고 등을 통해 총 500여회에 걸쳐 '음성도메인' 과 관련하여, "모바일 인터넷시대의 필수조건-음성도메인 접수개시!", "영문도메인, 한글도메인 선점경쟁에 이어, 이제 음성도메인 등록이 시작됩니다" 등으로 표기하여 광고하면서, 자사 홈페이지의 등록화면에 ICANN의 승인하에 운영되는 공인 TLD(top level domain)인 .com, .net, .kr 등을 표시하여 '가격.com' 등의 형식으로 등록을 받아왔는데, 당해 회사가 판매하고 있는 '음성도메인' 의 서비스 방식은 데이터베이스가 분산되어 있지 않고, 사용자의 PC안에 설치된 '세이저' 라는 프로그램의 일부인 'Voicedomain.db' 라는 데이터베이스 파일속에 들어있으며, 이 세이저를 실행시킬 때마다 자신이 운영하	

주요심결사례

사건명	위반내용	시정조치
	는 서버에 접속되어 데이터의 동기화가 이루어지므로, 이 서비스는 '도메인' 이 아니라 '키워드' 라고 해야 맞는 표현이기 때문에 상기와 같은 행위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기만적인 표시행위로 인정되기 때문에 표시광고법 제3조제1항제2호 위반	

2002. 4. 4. 심결

사건명	위반내용	시정조치
6개 흑연전극봉 생산업체들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2002국협0250)	유카 인터내셔널 인코퍼레이티드(UCAR International Inc.), 에스지엘 카본 악티엔게젤샤프트(SGL Carbon Aktiengesellschaft), 쇼와 덴코 케이케이(昭和電工株式会社), 토카이 카본 코퍼레이션 리미티드(東海カーボン株式会社), 니폰 카본 코퍼레이션 리미티드(日本カーボン株式会社), 에스이씨 코퍼레이션(株式会社 エスイーシー)은 1992. 5. 21. 런던 스카이라인 호텔에서 최고책임자급 회합을 개최, 세계시장에서 자신들이 생산하는 흑연전극봉 가격인상 등을 위해 공동행위의 기본원칙(이른바 "London Principles")에 합의하였다. 이때 합의된 기본원칙은 가격책정은 각 회사의 최고위층에서만 할 것, 생산자가 소재한 국가에서는 동 생산자가 가격을 인상할 경우 다른 생산자들도 이에 따를 것, 생산자가 존재하지 않는 아시아 시장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실무자급 회합을 개최할 것, 가격할인을 하지 않을 것, 자신들을 제외한 기업들에게는 특정 흑연전극봉 제조기술의 공여를 제한할 것, 지속적인 회합을 가질 것 등을 합의하였고, 1992. 5. 21. 이후 적어도 1998. 2. 13까지 약 4~5차례의 최고책임자급 회합 및 약 20여 차례의 실무자급 회합 등을 개최하였는 바, 최고책임자급 회합에서는 공동행위의 기본원칙을 재확인하고 아시아 시장을 대상으로 한 구체적 판매가격 합의, 시장분할 합의, 수출량 제한 합의 등의 행위를 하였으며, 실무자급 회합 등에서는 수요예측보고서를 상호교	▶ 과징금 납부 (1) 유카 인터내셔널 인코퍼레이티드 : 676백만원 (2) 에스지엘 카본 악티엔게젤샤프트 : 963백만원 (3) 쇼와 덴코 케이케이 : 4,396백만원 (4) 토카이 카본 코퍼레이션 리미티드 : 1,203백만원 (5) 니폰 카본 코퍼레이션 리미티드 : 3,645백만원 (6) 에스이씨 코퍼레이션 : 359백만원

사건명	위반내용	시정조치
	<p>환하고, 수요자, 국가별 가격인상 및 아시아 시장을 중심으로 한 판매량 할당 등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자신들의 회합사실을 효과적으로 은폐하기 위하여 유카인터내셔널은 “Pinot”, 에스지엘카본은 “BMW”, 일본기업은 “Cold”라는 닉네임 등을 사용하고 회합과 관련된 문서도 폐기하는 등의 행위는 대한민국 시장을 포함한 전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한 행위로 인정되고, 또한 대한민국 흑연전극봉 수요업체들은 1992. 5월부터 1998. 2월 기간중 이들로부터 553백만불 상당의 흑연전극봉을 수입하였는데 이들로부터의 수입가격은 1992년 톤당 평균 2,255불에서 1997년 톤당 평균 3,356불로 약 48.9% 상승하는 등 약 6년에 걸쳐 높은 가격으로 흑연전극봉을 구매하는 등의 피해를 보았음이 인정되므로 이들이 공동으로 흑연전극봉의 판매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한 것은 대한민국 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공정거래법 제19조제1항제1호 위반</p>	